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6 호
----------	--------

제출일자	2004. 11. 1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명칭 및 용어를 정비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나.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에 관리사업 추가

- 관리사업 :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

다. 상위 법령에 맞게 법령명칭 정비

-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 농공지구 ⇒ 농공단지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결과(2004. 9. 24 ~ 2004. 10. 16)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공지구조성사업”을 “농공단지사업”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원 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중 이자 다음에 “선수금”을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법제5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농공지구” 를 각각 “농공단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농공지구조성사업” 을 “농공단지사업”으로 하며, 별지 제4
호서식중 “농공지구” 를 “농공단지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p>제명: 시천사농공지구구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 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구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구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시설설치, 공업용수원개발 등을 말한다.</p> <p>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p>	<p>제명 : --농공단지사업-----</p> <p>제1조(----)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원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의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p>제3조(-----) ----- -----선수금----- -----</p>

현 행	개 정 후
<p>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u>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하는 용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u></p>	<p>제4조(---) ----- <u>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에 소요되는</u> ----- <u>시설비</u> ----- -----</p>
<p>제8조(용자 및 보조)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u>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용자금지원 상환액과 용자한도, 이율,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용자 결정에 따른다.</u></p>	<p>제8조(-----) ①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5조</u> <u>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u> -----</p>

<개정전>

관계법령발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第5條 (産業立地開發指針)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에 관한 基本指針(이하 "産業立地開發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農工團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産業立地開發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産業立地의 計劃的·體系的 供給에 관한 사항
2. 産業團地의 指定·開發·지원에 관한 사항
3. 環境影響評價를 포함하는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指針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産業資源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産業立地開發指針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産業立地開發指針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 (資金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團地내 入住業體의 誘致 및 中小企業用 産業用地 賃貸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